

사업수행능력평가(PQ) 질의사항 회신

* 사업수행능력평가(PQ)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등이 반영된 [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]를 같이 게시하오니 작성에 참고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고 입찰서를 작성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

연번	질의내용	답변																				
1	<p>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</p> <p>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계획표 상 안전분야 고급 1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, 안내서 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(토목, 안전)이 아닌 안전분야 1인이 맞는지</p>	<p>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16p,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</p> <p>3. 가.</p> <p>1)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총 3인으로 한다. 가) 평가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(토목) 1인,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(안전) 1인, 기술지원기술인(토목) 1인으로 한다.</p> <p>위의 내용을 참고 바람</p>																				
2	<p>해당분야 경력평가</p> <p>1. 택지(단지)분야 상주건설사업관리(감독 및 사업관리) 업무 수행 실적: 100%</p> <p>2. 현장기술경력은 배점 만점기간의 최대 50%까지 인정</p> <p>3. 해당분야 경력은 100%, 이외의 경력은 60%를 적용한다</p> <p>책임기술인이 택지(단지)분야 상주건설사업관리 경력이 3년, 택지(단지)분야 시공경력이 6년, 도로분야 시공 경력이 10년일 경우 해당분야 경력산정 시 어떤 산식을 적용하는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 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항 목</th><th style="width: 15%;">A</th><th style="width: 15%;">B</th><th style="width: 15%;">C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택지분야 건설사업관리</td><td>3년</td><td>3년</td><td>3년</td></tr> <tr> <td>택지분야 시공</td><td>4.5년 (만점기간의 50%)</td><td>4.5년 (만점기간의 50%)</td><td>4.5년 (만점기간의 50%)</td></tr> <tr> <td>도로분야 시공</td><td>6년 (기타경력 60%)</td><td>4.5년 (기타경력 60%, 만점 기간의 50%)</td><td>0년 (만점기간의 50% 초과)</td></tr> <tr> <td>합산경력</td><td>13.5년</td><td>12년</td><td>7.5년</td></tr> </tbody> </table>	항 목	A	B	C	택지분야 건설사업관리	3년	3년	3년	택지분야 시공	4.5년 (만점기간의 50%)	4.5년 (만점기간의 50%)	4.5년 (만점기간의 50%)	도로분야 시공	6년 (기타경력 60%)	4.5년 (기타경력 60%, 만점 기간의 50%)	0년 (만점기간의 50% 초과)	합산경력	13.5년	12년	7.5년	<p>상기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음 (안내서 18p 상세 정리한 내용)</p> <p>1. 책임기술인(토목) 분야별 인정 비율 가) 단지조성 분야: 100% 나) 이외의 경력: 60%</p> <p>2. 책임기술인(토목) 인정 기간 범위 1) 책임기술인은 발주청에서 시행한 택지(단지)조성공사 및 아파트·공동주택 단지토목공사의 상주 건설사업관리(감독 및 사업관리)업무의 수행실적 : 100% 2) 현장기술경력, 설계, 지도·점검 업무 수행 실적: 합산하여 배점 만점기간의 최대 50% 인정</p> <p>* 현장기술경력은 택지(단지) 조성공사 현장대리인, 시공, 공무, 품질부분 기술인경력이며, 안전, 관리 및 하도급 건설 경력 등은 불인정한다. 단, 안전기술인의 경우 안전현장경력(안전 관리자)을 인정한다.</p> <p>위의 기준에 따라 질의한 사례의 경우, 택지분야 시공 경력 6년과 도로분야 시공 6년(10년의 60%인정)을 더한 12년 중 배점 만점기간의 최대 50%인 4.5년을 인정받을 수 있음. 따라서 택지분야 상주건설사업관리 경력 3년과 4.5년을 합한 7.5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</p>
항 목	A	B	C																			
택지분야 건설사업관리	3년	3년	3년																			
택지분야 시공	4.5년 (만점기간의 50%)	4.5년 (만점기간의 50%)	4.5년 (만점기간의 50%)																			
도로분야 시공	6년 (기타경력 60%)	4.5년 (기타경력 60%, 만점 기간의 50%)	0년 (만점기간의 50% 초과)																			
합산경력	13.5년	12년	7.5년																			

	<p>용역수행성과</p> <p>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.6점을 부여한다(p.8)는 내용과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(p.20.)는 내용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</p>	<p>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8p, 20p는 동일한 내용으로 참고 바람</p>						
3	<p>당해용역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 평가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.</p> <p>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’ 18p ‘다. 해당분야 경력평가’의 ‘3) 해당분야 경력은 100%, 이외의 경력은 60%를 적용한다’ 항목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평가 작성 시 ‘단지분야(설계 등 전체) 100%, 단지 외 해당 전문분야 60%’로 평가하시는지 질의 합니다.</p> <p>예시)당해용역 기술지원기술인에 참여하는 기술인 A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참여분야</td> <td>100%</td> <td>60%</td> </tr> <tr> <td>기술지원기술인</td> <td>단지분야 설계 등</td> <td>해당 전문분야 전체</td> </tr> </table>	참여분야	100%	60%	기술지원기술인	단지분야 설계 등	해당 전문분야 전체	<p>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’ 18p에 따라, 기술지원기술인(토목)의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해당분야 경력은 100% 인정하고, 이외의 경력은 60% 인정함</p>
참여분야	100%	60%						
기술지원기술인	단지분야 설계 등	해당 전문분야 전체						
4	<p>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인원에 대해 질의 합니다.</p> <p>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’ 16p ‘가.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‘1)참여기술인의 평가는 총 3인으로 한다’ 의 ‘가)평가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(토목) 1인,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(안전), 기술지원기술인 1인(토목)으로 한다.’ 항목에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3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.</p> <p>그리고 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’ 18페이지 ‘1)책임기술인/분야별기술인(토목)과 2)분야별기술인(안전)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</p> <p>분야별기술인 평가 인원이 ‘분야별기술인 1인(안전)’ 인지(예시1),</p> <p>‘분야별기술인 1인(토목), 분야별기술인 1인(안전)으로 총 2인인지(예시2)질의합니다.</p>	<p>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16p,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</p> <p>3. 가.</p> <p>1)참여기술인의 평가는 총 3인으로 한다.</p> <p>가) 평가대상은</p> <p>책임건설사업관리(토목) 1인,</p> <p>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(안전) 1인,</p> <p>기술지원기술인(토목) 1인으로 한다.</p> <p>위의 내용을 참고 바람</p>						